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 · 관리 업무 지침

[시행 2016.6.21] [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9호, 2016.6.21, 일부개정]

조선왕릉관리소(기획운영팀) 02 - 3700 - 18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조선왕릉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선왕릉의 체계적 보존 · 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조선왕릉 ’ 이란 능과 원, 묘를 포함한다.
2. ‘ 공개 ’ 라 함은 「궁 · 능 · 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
3. ‘ 공개 제한 ’ 이라 함은 「궁 · 능 · 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4. ‘ 고건물 ’ 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
5. ‘ 석조물 ’ 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 · 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
6. ‘ 전통 조경물 ’ 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
7. ‘ 관람 시설물 ’ 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8. ‘ 소방 시설물 ’ 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조선왕릉은 보존 · 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궁 · 능 · 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 · 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이나 폭우 ·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 · 보호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선왕릉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조선왕릉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 제한의 절차)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지구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조선왕릉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제한 조선왕릉의 관리)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조선왕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선왕릉의 형태적 · 기능적 진정성 유지·관리
2. 조선왕릉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관리
3. 조선왕릉의 관람 환경 유지·관리
4. 조선왕릉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지구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제6조(공개 제한 해제)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호,2016.6.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